

약관공시사항

□ 기본사항

개정일	시행일	판매종료여부(종료일)	기존고객적용여부
2021-04-29	2021-05-01	판매중	적용

□ 신구조문대비표

약관명	해당약관 조항	
	수정 전	수정 후
외환거래 약관서	<p>제 11 조 은행에 의한 해지</p> <p>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, 제7조 제4항 제1호와 제6호, 제7조 제5항 제2호와 제3호 및 다음의 사유 (이하 “해지사유”라고 한다)가 발생한 경우에 은행은 거래처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, 은행이 시정조치 요구 시 통지한 기한까지 거래처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래처와 체결한 개별 외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u>다만</u>, 거래처에게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거래처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은행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 11 조 은행에 의한 해지</p> <p>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, 제7조 제4항 제1호와 제6호, 제7조 제5항 제2호와 제3호 및 다음의 사유 (이하 “해지사유”라고 한다)가 발생한 경우에 은행은 거래처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, 은행이 시정조치 요구 시 통지한 기한까지 거래처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래처와 체결한 개별 외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(<u>삭제: 다만</u>.) 거래처에게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거래처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은행은 <u>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고</u>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